

제1장 중기지방재정계획 개요

I

중기지방재정계획 제도 개요

1 제도의 의의

□ 개념

- 지방자치단체의 발전 계획과 수요를 중·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반영한 다년도 예산으로서,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수립하는 5년간의 연동화 계획

□ 제도 필요성

- 중·장기적 시계에서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, 경제·사회적 여건 변화를 반영한 연동화 계획으로 운영
 - 지방정부의 비전과 정책우선순위를 반영하여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재정의 예측가능성을 제고
 - 개별사업 검토 중심의 단년도 예산편성 과정에서 놓치기 쉬운 전략적 자원배분 기능을 강화
-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제시하는 중·장기 중점자원 투자방향 및 주요사업계획을 반영하여 국가와 지방의 재정적 연계성을 확보
 - 중앙부처는 지역정책의 준거를 제시하고, 지방자치단체는 재정 운용의 기본틀로 활용

② 근거규정 및 연혁

□ 근거규정 : 지방재정법 제33조('14.5.28 공포)

제33조(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 등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용하기 위하여 매년 다음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안과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고,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안전행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>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(이하 "중기지방재정계획"이라 한다)을 수립할 때에는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는 계획수립 절차 등에 따라 그 중기지방재정계획이 관계 법령에 따른 국가계획 및 지역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. <개정>

③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 <신설>

1. 재정운용의 기본방향과 목표
2. 중장기 재정여건과 재정규모전망
3. 관련 국가계획 및 지역계획 중 해당 사항
4. 분야별 자원배분계획
5. 예산과 기금별 운용방향
6. 의무지출(법령 등에 따라 지출과 지출규모가 결정되는 지출 및 이가지출을 말하며 그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이하 같다)의 증가율 및 산출내역과 재량지출(의무지출 외의 지출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의 증가율에 대한 분야별 전망과 근거 및 관리계획
7. 제59조에 따른 지역통합재정통계의 전망과 근거
8. 통합재정수지[일반회계, 특별회계 및 기금을 통합한 재정통계로서 순(純) 수입에서 순 지출을 뺀 금액을 말한다] 전망과 관리방안
9. 투자심사와 지방채 발행 대상사업
10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

④ 안전행정부장관은 매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침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할 수 있다. <신설>

1. 국가의 재정운용방향
2. 관련 국가계획 및 지역계획
3.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그 밖의 정보
4.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의 기준

- ⑤ 안전행정부장관은 관계 중앙관서의 장에게 제4항에 따른 지침의 작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관서의 장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. <신설>
- ⑥ 안전행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각 지방자치단체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기초로 매년 종합적인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고, 국무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안전행정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 <개정>
- ⑦ 안전행정부장관은 제6항에 따라 종합적인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「국가재정법」에 따른 국가재정운용계획과의 연계성을 높일 수 있도록 관계 중앙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. <신설>
- ⑧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항·제2항·제6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. <개정>
- ⑨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자문에 응하도록 하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둔다. <개정>
- ⑩ 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 <개정>
- ⑪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지 아니한 사업에 대해서는 제37조에 따른 투자심사나 지방채 발행의 대상으로 해서는 아니 된다. 다만,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할 때에 반영하지 못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. <신설>

□ 연 혁

- ('88년)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법제화(지방재정법)
- ('91년)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설치 및 국무회의 보고 규정
- ('93년) 국가계획 및 지역계획과 연동화 계획으로 운영
- ('95년) 계획수립 결과를 관계 부처에 통보, 협의 추진
- ('05년)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시기 조정(4월→11월)
- ('07년) 사업예산제도 운영과 연계하여 수립

③ 수립체계

□ 수립 주체

- 모든 지방자치단체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안과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고,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안전행정부에 제출
- 안전행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종합하여 관계부처 협의 후 국무회의 보고

□ 주요 내용

- (재정목표) 지역발전 및 재정운용의 목표·전략 등 기본방향
- (재정전망) 세입·세출 추계 및 투자가용재원 판단
- (투자계획) 분야별 정책방향 및 투자계획 수립

□ 수립 절차

| | | |
|---|---------------|--|
| ① | 안전행정부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기준 작성, 자치단체 통보 |
| ② | 지방자치단체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지방자치단체별 사업계획(안) 수립 |
| ③ | 지방자치단체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자치단체 중기지방재정계획 중 신규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관계부처 의견조회 |
| ④ | 지방자치단체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관계부처 의견을 반영, 중기지방재정계획 확정 ■ 지방의회 및 안전행정부에 제출 |
| ⑤ | 안전행정부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전국 중기지방재정계획 종합, 관계부처 협의 |
| ⑥ | 안전행정부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국무회의 보고, 중앙부처·자치단체 송부 |

□ 수립 과정에의 외부 참여 제도 활용 권고

① 【외부 의견수렴】

- 주민참여예산제를 활용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의견수렴
 - 주민참여예산제가 전면시행('11.9.9)되고 있으므로, **설명회 · 공청회 · 토론회 등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절차를 활용하여**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주민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

② 【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】

-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중기지방재정계획 확정
 - (구성) **위원의 1/2 이상을 지방의원·시민단체·관련 전문가 등 민간위원으로 구성**
 - (심의) 중기지방재정계획안 심의 시 토론을 통한 실질적 자문이 가능하도록 **최소 1회 이상은 대면심의 방식으로 운영**

③ 【지방의회 및 안전행정부 제출】

- 지방자치단체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**예산안과 함께 지방의회 및 안전행정부에 제출**
 - 각 자치단체는 회계연도 개시 30일전('14.12.2)까지 e-호조 시스템을 통해 안전행정부로 송신
- 지방의회는 예산안 심의자료로 활용
 - 향후 재정운용 목표, 재원배분 방향 및 성과지표 등 계획적 재정운용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활용

① 기본방향

○ 국가재정운용계획과의 연계성 확보

-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제시하는 중점투자방향, 주요사업계획을 반영하여 국가와 지방의 재정적 연계성 확보
- 국가정책방향 하에서 자치단체 실정과 특성에 부합하는 비전과 정책을 실현할 수 있도록 재정계획을 수립

○ 자치단체 중·장기 발전계획과 충실히 연계

- 자치단체의 종합발전계획 등을 충실히 반영하여 중기지방재정 계획 수립

○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자주재원 확충 및 합리적인 재원배분 등의 자치단체 자구노력 강화

- 모든 사업을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하여 불요불급한 사업에 대해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 추진

○ 주민, 지방의회, 관계 전문가 등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, 국회와 감사원, 언론 등 외부기관의 지적사항을 반영하여 수립

※ 당초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없으나 국고보조사업 추가 등 추가경정예산에 신규로 편성된 사업은 다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

2 대상 및 작성 기준

□ 대상 : 일반회계, 특별회계 및 기금

□ 작성기준

○ (‘15년도) 최근 5년간 최종예산을 참고하여 계획수립 시점에서 전망한 ‘15년도 최종 예산안 작성

※ 지방재정법 개정(‘14.5.28 공포)으로 계획수립 기간이 “당해”회계연도에서 “다음”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로 변경

○ (‘16년도 이후) ‘15년도 최종예산안을 기초로 성장률·증가율을 반영한 전망치를 적용하여 발전계획을 수립

- 「2013~2017년 중기지방재정계획」상의 분야별 지출총액을 기초로 작성하되, ‘15년 최종예산안을 기준으로 일부 가감 조정

* 한 분야가 여러 국·과에 걸쳐 있는 경우는 부서별 총액을 토대로 작성

- 변동요인이 없는 사업은 가급적 「2013~2017년 중기지방재정계획」상 투자계획을 유지하여 작성

- 「2013~2017년 중기지방재정계획」수립 이후 법령 제·개정, 국고보조사업 수요 조정 등이 있거나 변동요인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, 투자 계획을 조정하여 반영

* 투자계획 조정 시, 투자계획 조정사유를 명확히 부기

3 2015~2019년 수립기준 변경 사항

□ 계획기간 변경 (법 제33조 제1항 전단)

- 미래예측 기능 강화를 위해 “당해”회계연도부터 5년간의 계획 수립에서 “다음”회계연도부터 5년(‘15~’19년)으로 변경

□ 수립절차 변경 (제1항 후단)

- ‘지방의회에 보고’를 삭제하고, ‘예산안과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’(지방재정법 제44조의2 예산안의 첨부서류)하고, 회계연도개시 30일전까지 안전행정부에 제출

□ 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명시 (제3항 각 호, 신설)

- 재정운용의 기본방향과 목표, 분야별 자원배분계획 등 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법에서 명시함에 따라, 각 항목이 빠짐 없이 작성되도록 유의(목차 구성안 및 세부작성내용 참조)

□ 국가계획 및 지역계획의 구분 (제3항 제3호)

- 각 세부사업별로 국가계획* 또는 지역계획 중 해당사항을 표시하고, 국가계획은 해당 부처명(코드) 입력

* 각 부처 중기사업계획에 따라 자치단체의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된 사업

□ 기금을 계획에 포함 (제3항 제5호)

- 현행 일반회계, 특별회계(공기업, 기타) 외에 자치단체별로 운용 중인 기금(통합관리기금 포함)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하여 작성

□ 투자심사 및 지방채 발행사업 구분 (제3항 제9호)

- 각 세부사업 중 투자심사 및 지방채 발행대상사업 해당여부를 표시(BIL도표시)

□ 통합재정수지 추가 (제3항 제8호)

- 일반회계, 특별회계 및 기금을 통합한 재정통계로서 순 수입에서 순 지출을 뺀 **통합재정수지*의 전망과 관리방안** 추가

* 순수입-순지출+순융자(융자지출-융자회수), 개념 및 세부작성요령은 pp.29~31 참조

□ 의무지출 및 재량지출 구분 (제3항 제6호, 2015년 작성부터 적용)

- **‘의무지출’*의 증가율 및 산출내역과 ‘재량지출’**의 증가율에 대한 분야별 전망과 근거 및 관리계획** 추가

* (의무지출) 법령 등에 따라 지출과 지출규모가 결정되는 지출 및 이자지출

** (재량지출) 의무지출 외의 지출

※ 구체적인 기준 및 작성방법 등은 별도 기준 마련 후 2015년부터 작성

□ 지역통합재정통계 추가 (제3항 제7호, 2015년 작성부터 적용)

- 일반회계, 특별회계(교육비특별회계 포함) 및 기금, 지방공기업, 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기관의 재정상황을 통합한 자치단체별 재정상황의 전망 추가

※ 구체적인 범위, 작성방법 등은 별도 기준 마련 후 2015년부터 작성

□ 내부거래 중복 제거를 위한 순계처리

- 기금이 계획에 포함됨에 따라 회계간 내부거래를 제거하여 자치단체별 재정규모가 순계로 파악될 수 있도록 **순계처리과목 입력**(p.59 참조)

□ 계획의 실효성 강화 (제11항, 신설)

-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사업은 투자심사나 지방채발행 대상에서 제외(불가피한 사유*가 있는 경우는 예외)

* 천재지변, 법·제도의 변경, 국고보조사업 추가 등 계획수립 당시 예측 불가능한 경우

4 계획수립 세부사항

1. 중기세입 전망

1] 지방세 및 세외수입 추계

- (총괄) 「2013~2017년 국가재정운용계획」 및 「2014~2018년 국가재정운용계획(안)」 참조
 -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연평균 증가율이 경제성장률 $\pm 2\%$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, 전망치 및 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
 - * 예) 부동산경기가 살아나 거래세가 10%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, 담배값 인상에 따라 연간 담배소비량 10% 감소 예측 등
- (지방세) 최근 5년간 정수실적을 기초로 하되, 제도 변경 및 부동산 거래동향 등 자치단체 세수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
 - 안전행정부에서 보급한 세수추계기법 등 활용
 - 산식 적용이 어려운 경우, 거시경제지표 전망치, 과거 추이 등을 활용하여 산출 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

< 최근 세제개편 주요내용 >

- 지방소비세를 취득세율 인하에 따라 부가가치세의 6%에서 11%로 인상('14.1.1~)
- 지방소득세의 독립세 전환 및 법인소득분에 대한 세액공제·감면 정비('15.1.1~)
- 지역자원시설세 대형 화재위험 건축물 과세강화(2배 → 3배 증가, '14.1.1~)
- 주택 유상거래에 대한 취득세율 인하 ('13.8.28~)
 - 6억원 이하 4%→1%,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4%→2%, 9억원 초과 4%→3%
- 등록면허세 정액분 세율 인상 ('14.1.1~)
 - (등록분) 1만원 이하 100%, 1만원 ~ 5만원 75%, 5만원 초과 50% 인상
 - (면허분) 각 종별 50% 일괄 세율 인상
- 과세형평성 제고를 위한 지방세 과세대상 추가('14.1.1~)
 - (취득세) 요트회원권, (지역자원시설세) 화력발전, (담배소비세) 물담배, 머금은 담배 등 신종담배
- 지방세 감면 정비 지속 추진 등
 - 감면 축소대상 : 공공기관, 비영리법인 등, 중견기업이상

- (세외수입) 「수수료징수기준에관한규정(대통령령)」 「세외수입 실무편람」 「지방세외수입연감」 등 활용
 - 정상적 세외수입의 경우, '15년 최종예산안을 기준으로 최근 5년간 변동률 등을 감안하여 계상
 - 임시적 세외수입의 경우, 산출근거 등을 구체적으로 적시
 - * 예) 재산매각수입(00계획에 의거한 매각계획), 순세계잉여금 (지난 5년간 연평균 증가율), 전년도 이월금(실 예상액) 융자금회수(최근 5년간 추이)

② 이전재원 추계

- (총괄) 최근 이전재원 확보 실적, 국가경제 전망 및 「2013~2017년 국가재정운용계획」, 「2014~2018년 국가재정운용계획(안)」 고려
 - 각 재원별 연평균 증가율이 지난 5년간 중앙정부 지원금 연평균 증가율 $\pm 1\%$ 를 초과하는 경우 전망치 및 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
- (교부세) 국가재정운용계획(안)의 연도별 지방교부세 규모 및 각 자치단체의 기준재정수요·수입 증감 등을 감안하여 편성
- (보조금) 최근 5년간의 보조금 확보 실적 및 「2013~2017년 국가재정운용계획」 및 「2014~2018년 국가재정운용계획(안)」 참조
 - 신규사업의 경우 해당사업 또는 유사사업에 대한 국고보조율 등을 감안하여 과다 추계되지 않도록 주의
 - * 예산심의를 거친 국고보조사업 목록 및 보조율은 10월 중순경 내시 예정

③ 지방채 발행계획

- 지방채 증권, 차입금 등 지방채 발행을 통한 재원조달 계획을 세입 전망에 포함하여 작성

2. 중기재정운용 목표 및 자원배분 방향

① 중기재정운용 기본방향

- 민선6기 지방자치단체별 비전과 발전전략, 종합발전계획, 역점시책 등과 연계하여 5년간의 재정운용 기본방향 설정

② 중기재정운용 목표

- 사후적으로 재정계획이 제대로 실현되었는지에 대해 평가받을 수 있도록 재정운용의 목표를 구체적으로 설정
- 세입규모 및 재정지출 규모, 채무관리 수준, 재정수지 등
 - 세입규모 및 지출규모 : 연평균 〇〇% 증가 등
 - 채무수준 : 사업예산규모 대비 〇〇% 등
 - 재정수지 : 재정수지 〇〇% 이하 유지

③ 자원배분 방향

- 이전재원 비율이 높은 점을 감안, 중앙정부의 자원배분 방향을 적극 참고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
 - * 예시) 국토·지역개발 분야의 재정투자는 적정수준으로 조정하고, 사회복지·보건분야 확대(보육지원사업 대상자 확대 등)
- 계획기간 중 분야별 자원배분 규모 및 자원배분 구조의 변화를 표, 그래프 등을 적극 활용하여 작성
 - 분야별 목표(5년후 미래상) 및 주요 성과지표 제시
 - * 예) 산업·중소기업 분야 : 최적의 기업환경 조성을 통한 외국인 기업 유치, 외국인 투자 '15년 00만달러 → '19년 00만달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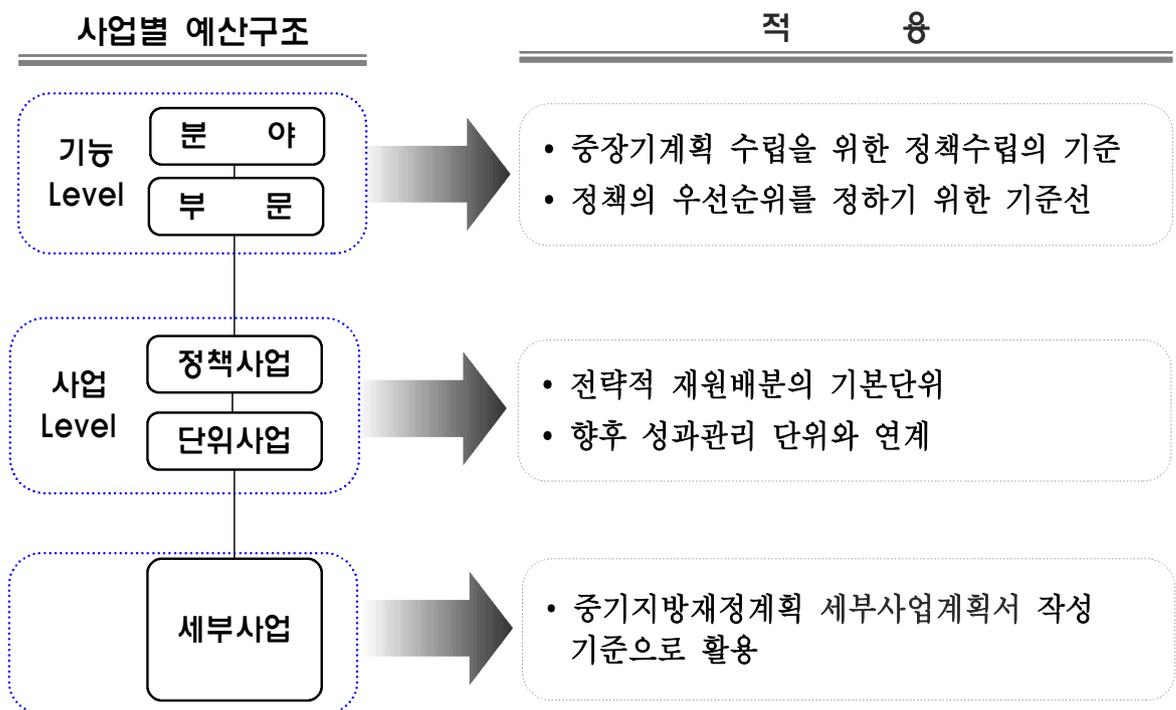
3. 분야별 정책방향 및 투자계획

① 기본 구성

- 정책방향 : 정책목표(5년 후), 중점 투자방향 및 성과지표
- 투자계획 : 정책사업·단위사업·세부사업 단위로 기술

② 분야 분류체계

- 사업별 예산의 기능별 분류 체계 적용
 - 중장기 자원배분(중기재정계획), 단년도 예산편성(기능별 세출예산) 및 통합재정분석(지출 및 순융자의 기능별 분류)의 기능별 분류 체계를 일원화하여 지방예산제도 간 연계성 강화
- 사업예산(사업구조화)의 단위사업 내 세부사업을 중기지방재정 계획 세부사업계획의 작성기준으로 활용



참고 중기지방재정계획 기능별 분류체계

| 13개 분야 | 52개 부문 | |
|---------------|--|--|
| 010 일반공공행정 | 011 입법 및 선거관리 014 재정·금융 | 013 지방행정·재정지원 016 일반행정 |
| 020 공공질서 및 안전 | 023 경찰 026 소방 | 025 재난방재·민방위 |
| 050 교육 | 051 유아 및 초중등교육 053 평생·직업교육 | 052 고등교육 |
| 060 문화 및 관광 | 061 문화예술 063 체육 065 문화 및 관광일반 | 062 관광 064 문화재 |
| 070 환경보호 | 071 상하수도·수질 073 대기 075 해양 | 072 폐기물 074 자연 076 환경보호일반 |
| 080 사회복지 | 081 기초생활보장 084 보육·가족 및 여성 086 노동 088 주택 | 082 취약계층지원 085 노인·청소년 087 보훈 089 사회복지일반 |
| 090 보건 | 091 보건의료 | 093 식품의약품안전 |
| 100 농림해양수산 | 101 농업·농촌 103 해양수산·어촌 | 102 임업·산촌 |
| 110 산업·중소기업 | 111 산업금융지원 113 무역 및 투자유치 115 에너지 및 자원개발 | 112 산업기술지원 114 산업진흥·고도화 116 산업·중소기업 일반 |
| 120 수송 및 교통 | 121 도로 124 해운·항만 126 대중교통·물류 등 기타 | 123 도시철도 125 항공·공항 |
| 140 국토 및 지역개발 | 141 수자원 143 산업단지 | 142 지역 및 도시 |
| 150 과학기술 | 151 기술개발 153 과학기술일반 | 152 과학기술연구지원 |
| 160 예비비 | 161 예비비 | |

※ 「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」 상의 기능별 분류 설명서 참조

③ 세부사업계획

< 세부사업계획 작성대상 사업 기준 >

- 연도별 사업경비에는 사업예산, 행정운영경비, 재무활동을 모두 포함하고, 이 중 사업예산에는 사업구조화상의 모든 사업을 포함
 - ‘세부사업계획서’ 작성에 포함될 주요 사업은 이 중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을 대상으로 함(단, 행정운영경비, 재무활동, 예비비는 제외)
 - ‘세부사업계획서’ 작성 대상 주요사업 기준은 각 자치단체별로 자율적으로 결정(예산규모, 세부사업 수 등을 고려)
 - 다만, 아래 표 ‘안전행정부 제출 대상 사업 기준’에 해당하는 사업은 반드시 세부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안전행정부에 제출

< 안전행정부 제출 대상 사업 기준 >

- ◇ 광역자치단체 : 총사업비 40억원 이상
- ◇ 기초자치단체
 - ┌ ‘14년 예산 3천억원 이상 : 총사업비 20억원 이상
 - └ ‘14년 예산 3천억원 미만 : 총사업비 10억원 이상
- ◇ 다만, 공연·축제 등 행사성사업은 광역 5억, 기초 3억원 이상 (총사업비 기준)
- ◇ 외국차관 도입 사업, 해외투자 사업 및 다른 자치단체(광역은 광역, 기초는 기초)와 공동으로 투·융자하는 사업은 광역 10억, 기초 5억 이상 (총사업비 기준)

※ 총사업비 : 기투자 + 5개년계획(‘15~’19) + 향후 투자액이 모두 포함된 사업비(연례반복적인 사업은 계획기간 내 사업비 합계)

⇒ 우리시 2014년도 당초예산 규모 : 450,672백만원

<세부사업계획 작성 방법>

- 세부사업계획은 분야·부문별로 사업예산(보조사업+자체사업)에 대해서 입력하되, 정책사업, 단위사업, 세부사업 순으로 작성
 - 행정운영경비, 재무활동의 경우 기투자, 향후 투자는 입력하지 않고 5개년 자료만 입력
 - 사업기간이 5년 이상이거나 중기지방재정계획 기간 중 일부만 시행되는 사업도 입력대상에 포함

 - 교부세(보통, 특별, 부동산)는 자체사업으로 입력
 - 광역은 시도비, 기초는 시군구비로 입력

 - 보조금은 광역에서는 국고 / 자체사업(시군구에 대한 시도비 보조사업 포함)으로 입력, 기초에서는 국고 / 시도비 / 자체사업으로 입력

 - 국고에서 보조하는 BTL 사업은 국고보조사업에 준하여 처리하고, 자치단체에서 실시하는 BTL 사업은 자체사업에 준하여 처리
 - 건설기간 중 민간 시설투자는 투자계획에 반영하지 않고, 임대기간(약정기간) 중 정부지급금을 연차별 투자액 및 향후 투자액으로 표시
- ※ 정부지급금 = 임대료 + 운영비
- (임대료) 민간투자비에 수익률을 반영한 투자원리금을 임대기간 중 매년 균등분할한 지급분
 - (운영비) 민간사업자가 투입하는 시설유지·보수비용 등 운영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비용 보전분

4. 계획 수립 세부일정

| | | |
|--------|--|-----------|
| 안전행정부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기준 마련 및 지방자치단체 통보 | '14년 7월 |
| ↓ | | |
| 지방자치단체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세부사업조서 입력 * 시스템 입력 사항은 지방재정정보화사업단과 협의 | 8월 |
| ↓ | | |
| 지방자치단체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중기지방재정계획 작성 | 9월 |
|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 확정 * 국고보조사업 가내시 확정(10월 중순) | 9~10월 |
|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지방의회 및 안전행정부 제출 | 11월 |
| ↓ | | |
| 안전행정부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중기지방재정계획 종합 | '15. 1~2월 |
|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중기지방재정계획 관계부처 협의 | 2월 |
| ↓ | | |
| 안전행정부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국무회의 보고 • 중앙부처·자치단체 송부 | 3월 |